

##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 8. 21 화순군수

나. 회부일자 : 2000. 8. 21

다. 상정일자 : 2000. 10. 20

(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회의)

####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환경과장 김재월

나. 개정사유

- 우리군에 소재한 간이상수도와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조례명을 "화순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라 한다.
-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한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함(제3조)
-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1회 이상 실시 토록 의무화 함(제6조 및 제7조)
-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 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함(제10조)
-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 급수시설을 폐지할수 있도록 함(제11조)
-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 군수는 간이 상수도 시설의 유지 및 운영,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民間에게 위탁 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양정열)

-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법 제32조 제2항 및 제3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화순군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와 화순군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를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인 급수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 주요 개정 내용은,
  - 간이급수시설의 정비계획을 매5년마다 수립토록 기간을 정하였으며 종전 연1회 실시하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을 분기 1회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 간이 급수시설을 폐지코자 할 때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결을 듣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될때나 시설개량 등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군수가 임으로 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함.
- 전반적으로 간이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하였다고 사료됨.
-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상급관서의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검토됨.

###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 5. 토론요지

“생 략”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입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군수는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 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 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가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 3 장 관 리 비 용

제13조(요금징수) ① 군수는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의 급수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관리비용) ① 군수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 분담 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계량기) 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군수가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 제 4 장 사용자 대표 협의회

제16조(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①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를 주재한다.

④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  
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5 장 보 칙

제20조(실비보상) 군수는 간이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군수는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  
리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  
조에 의한 정기진검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의 위탁) ①군수는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  
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1999. 6. 23  
조례 제1603호)는 이를 폐지한다.